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자가 실명 외에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 창작·공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저작자 등의 “성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부에 이명을 표시할 근거가 없고 제3자가 이명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저작권등록부에 실명과 함께 이명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은 경우 등록공보와 등록부 열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을 등록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 ‘성명’, ‘성명등’, ‘성명 등’ 등의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어, 이를 「저작권법」의 표현인 ‘실명’으로 통일하여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작권등록부 이명 병기 근거 마련(안 제27조제1항제3호)

- 1) 저작권등록부에 저작자 등의 “성명”을 적던 것을 “실명”을 적도록 하되,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함.

나.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 방식 선택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27조의6 신설)

- 1) 저작자 등의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은 경우, 등록공보의 발행·게재 및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을 통하여 공개되는 방식을 등록 신청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개 방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위원회는 선택 또는 변경 신청에 따른 방식으로 실명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 방식의 구체적인 구분 및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성명”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16조의4제2호,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

- 1) 「저작권법」의 용어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성명”, “성명등”으로 서로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실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통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을 “실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제2호 중 “성명등”을 “실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성명등”을 “실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성명”을 “실명 또는 이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명”을 “실명”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성명등”을 “실명”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성명”을 “실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성명”을 각각 “실명”으로 한다.

3. 저작자 등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 이를 병기할 수 있다)

제2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6(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 방식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에 따

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에서 실명과 이명을 병기한 경우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재 및 제27조의5에 따른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통하여 공개되는 방식을 저작권 등록 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등록된 이후에는 위원회에 그 공개방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택 및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7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개 방식의 구체적인 구분, 표시 방법 및 선택·변경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호 중 “성명”을 “실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성명등”을 “실명”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성명등”을 “실명”으로 한다.

제45조제1호나목 중 “성명등”을 “실명”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성명”을 “실명”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성명 및 주소”를 “실명 및 주소”로, “성명 및 주소를”을 “실명 및 주소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성명”을 “실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 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 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 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 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 구)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u>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 · 아호 · 약칭 등(이하 “이명” 이라 한다)</u> 으로서 널리 알려 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 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자료		2. ----- <u>실명(법인 · 단체인 경 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이명(예명 · 아 호 · 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 시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 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 시 등) ① ----- ----- ----- -----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3. 4. (생략)

② (생략)

제20조(의견제출 등) ①·② (생략)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 (생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견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5. (생략)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 ④ (생략)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

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또는 이명

3. ----- 실명

4. 5.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 사항) -----

-----.

1. ~ 3. (생 략)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u>성명</u> 및 생년월일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 2. (생 략) 3. <u>저작자 등의 성명</u> 4. (생 략) 5. 등록권리자의 <u>성명</u> 및 주소 6. (생 략)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u>성명</u> 및 생년월일 ②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실명</u> ----- --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저작자 등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 이를 병기할 수 있다)</u> 4. (현행과 같음) 5. ----- <u>실명</u> ----- 6. (현행과 같음) 7. ----- ----- ----- <u>실명</u> ----- -- ②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6(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 방식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u>
--	--

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에서 실명과 이명을 병기한 경우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재 및 제27조의5에 따른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통하여 공개되는 방식을 저작권 등록 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등록된 이후에는 위원회에 그 공개방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택 및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7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개 방식의 구체적인 구분, 표시 방법 및 선택·변경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저작권자의 표시)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자의 표시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지

2. 3. (생략)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

1. -----

-- 실명 -----

2. · 3. (현행과 같음)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①_____

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 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생략)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①-----

-----.

- ## 1. (생략)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3. 4. (생략)

- ② (생략)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

-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생략)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생략)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생략)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생략)

제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 실명-----

2. (현행과 같음)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

-----.

1. (현행과 같음)

2. -----

----- 실명 ----
--

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알선) ① -----

-----.

1. ----- 실명 및 주소-----

인의 <u>성명 및 주소를</u> 포함한 다) 2. (생 략) ② (생 략) 제75조(기증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 저작 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u>성명</u>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 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u>실명 및 주소를</u>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기증 절차) ① (현행과 같 음) ②----- ----- ----- <u>실명</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203-2477